

2025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20개 사업장 명단 공표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2024년 기준) 이행률 93.9%, 전년 대비 0.8%p 증가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민석)는 5월 31일(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

본 명단 공표는 2012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 보육 지원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태조사는 교육부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 및 각 시도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9%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43개소 중 1,083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60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43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0.8%p 상승한 것이다.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에 대해 사업주가 보육 지원

< 2023년, 2024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현황>

(단위 : 개)

구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이행(C)
		계	설치	위탁보육	
2024년	1,643	1,543(93.9%)	1,083	460	100(6.1%)
2023년	1,639	1,526(93.1%)	1,120	406	113(6.9%)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100개소)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 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0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0개 사업장은 명단을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이번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0개 사업장(명단 공표 20개+명단 공표 제외 80개) 전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제도이자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 수단이다.”라고 강조하며 “설치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 뿐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수 인력 확보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공표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명, 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공표된다.

-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 → 교육부 소식 → 명단 공표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청년/여성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및 미회신 사업장 명단

- 【붙임】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명단 공표 대상
2.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 및 명단 공표 제도 개요
3.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규정
4.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지원

담당 부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	책임자	과 장	지혜진 (044-203-7216)
		담당자	사무관	김동경 (044-203-7222)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세희 (044-202-7470)
		담당자	사무관	황소진 (044-202-7976)

붙임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명단 공표 대상

* 가나다 순으로 명단 공표

(’24.12.31. 기준)

연번	사업장 명칭*	주소	사업주명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 근로자 수	명단공표 누적 횟수	사업장에서 제시한	
							보육 대상 영유아 수	미이행 소명사유(미인정)
1	(주)다스	경북 경주시	이상은	1,432	107	10	255	보육수요 부족
2	대주회계법인	서울 강남구	김영백	604	204	1	114	기타
3	(주)덴티움	경기 수원시	서승우	846	216	1	60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
4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 강남구	김현호	572	185	1	49	보육수요 부족
5	의료법인명인의료재단화홍병원	경기 수원시	전덕규	495	348	1	39	보육수요 부족
6	부여군청	충남 부여군	박정현	633	271	1	80	보육수요 부족
7	주식회사 비에이치제2공장	인천 서구	최영식	959	285	1	0	보육수요 부족
8	시네오스헬스코리아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이소라	329	304	1	67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
9	주식회사 아이티센엔텍	경기 과천시	신장호	965	197	3	84	보육수요 부족/기타
10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	경남 고성군	이승철	593	72	1	83	보육수요 부족
11	여수전남병원	전남 여주시	정종길	502	383	1	21	기타
12	여천전남병원	전남 여주시	정순주	385	313	2	43	소명의사 없음
13	와이엠씨(주)	충남 아산시 (탕정)	이윤용	543	57	1	4	보육수요 부족/기타
14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	인천 서구	고동현	1,516	1,088	2	270	보육수요 부족
15	(주)인터로조	경기 평택시	노시철	635	316	1	49	보육수요 부족
16	자화전자(주) 구미공장	경북 구미시	김상면 김찬용	1,504	436	1	19	보육수요 부족
17	지멘스헬시니어스 주식회사	경북 포항시	이명균	550	272	1	39	보육수요 부족/기타
18	주식회사 푸드웨어	전북 김제시	신동식	526	340	1	22	보육수요 부족/기타
19	주식회사 하나로넷	경기 화성시	권주석	516	17	1	67	기타
20	현대스틸파이프주식회사	울산 북구	채봉석	902	65	1	179	1년 이내 의무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 주소

** 명단공표 누적 횟수는 2025년 공표횟수(1회) 포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없음

주요사항	내 용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동법 시행령 제20조의4, 제20조의5 ('12.6.29 시행)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관계부처 합동(교육부, 고용노동부, 시도) 조사 실시(매년 1분기~) * (고용부) 일반 기업, (시·도) 지방행정기관 (교육부) 국가기관 및 그 외 사업장 * 조사수행 : 한국보육진흥원,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설치 의무 사업장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공표 사항	사업장 명칭·주소, 사업주 성명, 상시(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 누적 위반 횟수·미이행 사유 등
공표 시기 및 방법	매년 5월 말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 및 2개 이상 일간지 게재
이행 기준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② 위탁 보육
공표 대상 (기준)	설치 의무 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명결과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과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공표 제외 사유	①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설치 중인 경우 ③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 총 9명 - 교육부(1인), 근로자 대표(1인), 사업주 대표(1인), 법률전문가(1인), 공익대표(2인), 보육전문가(3인)
공표 절차	①심의 ⇒ ② 공표대상 사업장에 사실 통보 ⇒ ③ 20일 이상 소명자료 제출 등 의견진술 기회부여 ⇒ ④ 공표(제외)대상 사업장 재심의 ⇒ ⑤ 공표대상 사업장 최종확정 및 공표(매년 5.31.까지)

붙임 3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규정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여부 판단 기준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 사업주가 단독·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

② 위탁보육 실시

-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하여 보육하고,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

⇒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보육료(부모가 바우처로 어린이집에 지불하는 비용)의 총합을 의미하며, 그 비용의 50% 이상을 회사가 어린이집에 추가로 지원

* 예) 근로자 자녀 중 1세 영유아 5명, 2세 영유아 10명, 3~5세 영유아 15명을 어린이집에 위탁보육하는 경우 회사의 최소 지원비용('25년 보육료 기준)

→ $(47.5\text{만 원} \times 5\text{명} + 39.4\text{만 원} \times 10\text{명} + 28\text{만 원} \times 15\text{명}) \times 0.5 = 525.7\text{만원}$

□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

① 이행명령 부과(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재차 이행명령 가능

② 이행강제금 부과(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3)

- 2차 이행명령까지 불이행시 1년에 2회, 매회 1억 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가능
-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부과 가능

□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영유아보육법 제56조)

붙임 4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지원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기준 및 한도 >

구분	지원 종류	내역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설치비	무상 지원	대규모 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 원	소요비용의 60% *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공동			6억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4억 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40%)
			공동	우선지원대상 기업2~4개소인 사업주 단체		10억 원	
				우선지원대상 기업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20억 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 원	소요비용의 90%
					시설임차비	3억원	임차비(월세에 한함): 80%
		대규모기업		교재 교구비 (교체비: 3년 교체시마다 3천만원)	5천만원	소요비용의 60% *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우선지원대상기업			7천만원	소요비용의 90%	
인건· 운영비	인건비 지원	대규모기업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월 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최대 138만 원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월 200만 원 ~ 520만 원	* 기준: 매월 말일 말일 보육아동 현원에 따라 차등 지원	